

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(2012. 9. 3)

제 1조(목적)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건양대학교와 산업체간의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의 교육과정개발 및 관련된 교육과정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명칭 및 소재지) 본 센터는 「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」라 칭하며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.

제 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학생의 현장실습 수요조사
- ②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
- ③ 현장실습 산업체와의 학생연계
- ④ 현장실습 지도교수 연계
- ⑤ 현장실습 성과 평가 및 관리
- ⑥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관리
- ⑦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개발
- ⑧ 캡스톤디자인 성과 평가 및 관리
- ⑨ 기타 센터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

제 4조(조직구성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팀과 캡스톤 디자인 지원팀을 둘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팀과 필요한 팀원을 둘 수 있다.

제 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운영위원은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센터 운영 계획 수립
 2. 센터 예산 및 결산
 3.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 6조(현장실습지원단) ① 학생 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현장실습지원단 구성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7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, 학교지원금, 산학협력단 예산,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.

- ② 센터의 회계 처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및 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.

제 8조(운영세칙 등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규정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 2로 규정된 현장실습교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 현장실습이라 함은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반 현장교육 및 실무실습을 말한다.

제 3조(기간 및 편성) ① 현장실습 기간은 근무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총 실습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되 1일 8시간씩 주5일(40시간)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60% 이상 취득한 경우 1학점을 부여한다.

② 현장실습은 방학 중 시행하는 '단기제현장실습'과 학기 중에 시행하는 '학기제 현장실습'으로 편성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기제 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중 2회를 인정하며, 2~4학점을 부여하며 동일 과목이수는 불허한다..

2. 학기제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중 2회를 인정하되 국내/해외 각 1회씩 12~18 학점을 부여한다.

③ 제2항 2호에도 불구하고 해외학기제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외 2회를 인정하며 그 학점은 최대 44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(개정 2015. 3. 9)

④ 교육과정 편성은 다음과 같다.

교과목 코드	교과목명	학점	시 수		이수시기	
			이론	실습	학년	학기
99513A	국내단기제현장실습< 2>	2		80H	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	
99514A	국내단기제현장실습< 3>	3		120H		
99515A	국내단기제현장실습< 4>	4		160H		
99516A	국내학기제현장실습<12>	12		480H		
99517A	국내학기제현장실습<13>	13		520H		
99518A	국내학기제현장실습<14>	14		560H		
99519A	국내학기제현장실습<15>	15		600H		
99520A	국내학기제현장실습<16>	16		640H		
99521A	국내학기제현장실습<17>	17		680H		
99522A	국내학기제현장실습<18>	18		720H		
99534A	해외단기제현장실습< 2>	2		80H		
99535A	해외단기제현장실습< 3>	3		120H		
99536A	해외단기제현장실습< 4>	4		160H		
99527A	해외학기제현장실습<12>	12		480H		
99528A	해외학기제현장실습<13>	13		520H		
99529A	해외학기제현장실습<14>	14		560H		
99530A	해외학기제현장실습<15>	15		600H		
99531A	해외학기제현장실습<16>	16		640H		
99532A	해외학기제현장실습<17>	17		680H		
99533A	해외학기제현장실습<18>	18		720H		

제 4조(수강 자격) ① 현장실습 참가대상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졸업 최종 학기에는 현장실습 인정학점 이외의 졸업 잔여학점이 있을 경우 현장실습에 참가할 수 없다.

②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한다.

제 5조(신청 및 선발절차) ① 현장실습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 고시한 소정의 기간 내에 현장실습 이수학생을 선발하고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현장실습 참가 희망 학생은 현장실습이수신청서(별지서식 제1호) 및 현장실습 이수계획서(별지서식 제2호), 실습기관소개서(별지서식 제10호)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학과장은 실습 내용의 전공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및 보완한 후 현장실습 이수신청자 명부(별지서식 제3호)를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제출한다.

③ 총장은 현장실습기관의 적정성, 실습 분야 및 실습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습학생을 최종 선정한다.

제 6조(실습이수) ① 현장실습 참가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생에게 다음의 서류를 지참시켜 파견한다.

1. 현장실습 주간일지(별지서식 제4호)
2. 현장실습평가서(별지서식 제5호)
3. 기타 필요한 사항

③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 주간일지를 매주 기록하여 현장실습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실습 5주차가 종료되면 현장실습중간보고서(별지서식 제6호)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소속 학과에 제출한다.

⑤ 현장실습 학생은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참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현장실습 시행 학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습성적평가서(별지서식 제7호)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조(현장지도방문 평가) ① 현장실습 시행 학과는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자체 선임하여 실습 참가 학생에 대한 현장지도방문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지도교수는 실습 환경,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방문평가보고서(별지서식 제8호)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.

③ 현장지도방문은 단기제의 경우 1회, 학기제의 경우 1회 이상을 시행하여야 하며,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지도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 8조(학점인정) ① 현장실습 성적은 다음의 각호로 구성된다.

1. 실습참가학생 자가평가 : 10%
2. 실습기관 평가 : 70%
3. 실습 지도교수 평가 : 20%

② 현장실습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.

③ 현장실습 성적은 이수(Pass), 이수불인정(Non-Pass)로 평가한다.

④ 현장실습 중도 포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도 탈락한 자에 한하여 차후 잔여시간 보충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1. 병역법에 의한 입영에 의하여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
2. 학칙 제69조 1항에 따라 일반 휴학하는 경우
3. 실습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

⑤ 현장실습은 전공심화 학점으로 반영하며 복수전공, 부전공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⑥ 실제 현장실습 내용이 전공교과분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선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실습 시행학과와 실습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판정한다.(개정 2015. 3. 9)

제 9조(실습기관) 현장실습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소기업 기본법,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
2.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3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4.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업체 또는 기관

제10조(실습생의 의무) 실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.
2. 실습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현장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한다.
4. 현장실습 활동 저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대학에 연락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습의무위반 조치)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현장실습기관의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자
2.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
3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자

제12조(협약사항)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 시에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(별지서식 제9호)를

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.

1.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
2. 현장실습에 필요한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
3. 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(후생복지 등)
4.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, 학사내규에 따른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10월 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4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09학년도 2학기 현장학기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본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(개정일)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.

- [별지서식 1] 현장실습 이수신청서
- [별지서식 2] 현장실습 이수계획서
- [별지서식 3] 보호자 동의서
- [별지서식 4] 현장실습 이수신청자 명부
- [별지서식 5] 현장실습 표준협약서
- [별지서식 6] 실습기관 소개서
- [별지서식 7] 현장지도방문 평가 계획서
- [별지서식 8]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
- [별지서식 9] 현장실습 주간일지
- [별지서식10] 현장실습 중간보고서
- [별지서식11] 현장실습 평가서
- [별지서식12] 학생 현장실습 성적평가서

보호자 동의서				산학취업책임교수	
현장실습 이수 신청자					
학 과		학 년		학 번	
성 명		연 락 처		성 별	남 / 여
신 청 학 점	학점	이 메 일	@		
실 습 기 간	20 년 월 일() ~ 20 년 월 일()까지 (총 시간)				
개 인 정 보 제 공 (√)	현장실습 신청자 보험계약 체결 개인정보 제공 동의안 【동의함 () / 거부함 ()】 ※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라 보험미계약 사고시 본인 책임.				
보 호 자					
보호자성명		보 호 자 연 락 처		보 호 자 성 별	남 / 여
실습 대상 기관					
실 습 처 명			실습담당자		
실 습 부 서			부서연락처		
실 습 업 체 주 소					

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참가를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보호자 : _____(서명)

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

현장실습 이수신청자 명부						
학과명 :			실습구분 : <input type="checkbox"/> 단기제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기제			
연번	인 적 사 항			산업체명(지역)	실습기간(총 시간)	실습처 발굴 & 현장지도교수
	학년	학번	성명			
					~ ()	
계	_____명			_____개 기관(업체)		
<p>상기와 같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신청자 명부를 제출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산학취업책임교수 : _____(서명)</p>						
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						

현장실습 표준협약서

제1조(목적)

이 현장실습협약서는 ()대표(이하"갑"이라 한다)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(이하"을"이라 한다) 상호 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현장실습기간 및 장소)

- ① 현장실습기간은 20 . . . ~ 20 . . . 으로 한다.
- ② 현장실습은 "갑"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
제3조(사업자의 의무) "갑"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① "을"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, "을"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한다.
-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환경(부서, 시설, 공구, 재료 등) 일체를 제공한다.
- ③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"을"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.

제4조(현장실습생의 권리)

- ① 현장실습 참가자는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현장실습참가자는 현장실습 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현장실습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제5조(현장실습생의 의무) "을"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.
-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.
- ③ 현장실습을 위하여 "갑"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환경이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④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"갑"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
제6조(안전보호)

- ① "갑"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는 "을"이 부담한다.
- ③ "을"은 현장실습 참가자가 현장실습 도중 그 현장실습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소관 보상규정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.

제7조(현장실습내용의 변경 및 해지)

- ① "갑"은 현장실습생의 소질,건강,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"을"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7일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"갑"과 "을"은 현장실습 참가자와 미리 협의한다.

제8조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훈련촉진법, 근로기준법, "갑"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.

20 . . .

(을)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

단장 홍영기

(갑) 기관(업체)명

대표

현장실습 표준협약서

제1조(목적)

이 현장실습협약서는 ()대표(이하"갑"이라 한다)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(이하"을"이라 한다) 상호 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현장실습기간 및 장소)

- ① 현장실습기간은 20 . . . ~ 20 . . . 으로 한다.
- ② 현장실습은 "갑"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
제3조(사업자의 의무) "갑"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① "을"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, "을"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한다.
-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환경(부서, 시설, 공구, 재료 등) 일체를 제공한다.
- ③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"을"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.

제4조(현장실습생의 권리)

- ① 현장실습 참가자는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현장실습참가자는 현장실습 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현장실습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제5조(현장실습생의 의무) "을"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.
-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.
- ③ 현장실습을 위하여 "갑"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환경이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④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"갑"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
제6조(안전보호)

- ① "갑"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는 "을"이 부담한다.
- ③ "을"은 현장실습 참가자가 현장실습 도중 그 현장실습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소관 보상규정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.

제7조(현장실습내용의 변경 및 해지)

- ① "갑"은 현장실습생의 소질,건강,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"을"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7일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"갑"과 "을"은 현장실습 참가자와 미리 협의한다.

제8조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훈련촉진법, 근로기준법, "갑"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.

20 . . .

(을) 기관(업체)명

대표

(갑)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

단장 홍영기

실습기관 소개서

실 습 기 관 개 요	기관명			지점(지사)명		
	대표자	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					
	종업원 수	본사 : 명 / 지사 : 명				
	홈페이지	http://				
	연락처	전화 : () -		FAX : () -		
	업종			주요사업 및 생 산 품		
	자본금	백만원		연매출액	백만원	
	담당부서		담당자		e-mail	
	실습생 지원사항	① 근무시간 : ② 급 여 : 지원금 원/월 원/일 (식비+교통비) 추가 지원				
회 사 소 개	설 립 일 연 혁 사업내용 등의 회사소개					

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

현장지도방문 평가 계획서					산학취업책임교수
학과명	○○○○ 학과		지도교수	○○○	
연 번	현장지도 방문기업(관) / 지역	학생성명	실습기간	방문일자	비고
1	건양기업 주식회사 / 서울	김 건 양	'13.0.00~'13.0.00	'13. 00. 00. (교수지정)	2주차 방문
2	건양기업 주식회사 / 대전	홍 길 동	'13.0.00~'13.0.00	"	2주차 방문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상기와 같이 현장지도 방문 평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자 현장실습 지도교수 _____(서명)					
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					

※ 방문일시는 예정 날짜를 작성하며, 실습기간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합니다.
 ※ 담당 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.

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				산학취업책임교수	
실습기관명			부서명		
주소			담당자 연락처		
실습기간			방문일자		
현장실습학생 방문평가 (지도교수 평가)	학년	학번	성명	현장지도 방문 평가 (○)	
				우수	보통
				10	7
학생현장 실습실태	근무환경(✓)		매우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통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흡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우미흡 <input type="checkbox"/>		
지도사항					
건의사항 개선사항					
상기와 같이 현장지도 방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자 _____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 _____(서명)					
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					
※ 첨부 : 현장지도 방문 평가 증빙자료 필수 (증빙되지 않으면 불인정)					

현장지도 방문 평가 증빙자료

실습기관명	
현장실습처 사 진 / 담당자/학생 면담사진	
면담자 명함	

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

현장실습 평가서										
인적사항	학과명		학 년	학 번		성 명				
실습사항	산업체 주소									
	산업체명									
	근무부서									
	실습기간		년 월 일 ~		년 월 일 (총		시간)			
평가항목			평 점							
			7점	6점	5점	4점	3점			
1. 실습 태도 (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)										
2. 직무 수행 능력 (신속성, 정확성, 완결성)										
3. 실습 상황에 적응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처리하는 적응력										
4.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습내용에 대한 지식의 정도										
5. 복장 및 품행의 단정성										
6. 직원 및 실습생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										
7. 실습에 대한 적극성 및 창의성										
8. 출.퇴근 상황										
9. 직무에 대한 책임감 및 독창적인 능력										
10. 직무 환경에 대한 정리, 정돈 상태										
총 계			_____ 점							
총 평가	대단히 우수		우 수	보 통		보통이하		불만족		
평가자	소속 :		직위 :		성명 :		(인)			
	연락처 : (전화)				(Fax)					
위와 같이 현장실습 평가 결과를 증명합니다.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
대표자 (인)										
건양대학교 총장 귀하										

※ 대표자 명의로 증명되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.

※ 단, 정부기관과 같이 대표자 증명이 어려울 경우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 대체 인정합니다.

학생 현장실습 성적평가서										
인적사항	학과명		학 년	학 번		성 명				
실습사항	산업체 주소									
	산업체명									
	근무부서									
	실습기간		년 월 일 ~		년 월 일 (총		시간)			
자가평가					지도교수평가					
평가항목	평가내용			배점	평가항목	평가내용			배점	
	우수	보통	미흡			우수	보통	미흡		
성실도	2	1	/		실습계획서	5	3	1		
협동성	2	1	/		현장실습일지	5	3	1		
창의성	3	2	1		현장지도방문	「현장지도 방문 평가 보고서」의 배점을 기재				
성취도	3	2	1		평점합계	점			(서명)	
평점합계	점			(서명)	종합평가					
실습기관(업체) 평가					자가평가	실습기관평가		지도교수평가		
평점합계	평어				점	점		점		
평가자	직위		성명		총 점					
※ 실습기관(업체) 평가는 공란으로 두고 제출.					성적 등급	이수구분		인정학점		
기록자	현장실습지원센터		현장실습담당 (인)		P / NP	전공심화		학점		
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최종 결과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
학과명 :										
산학취업책임교수 : (서명)										
건양대학교 총장 귀하										

※ 이수자는 자가평가 부분만 작성하고 단과대학에 제출하며, 단과대학은 지도교수 평가 후 본부 제출